

전주지방법원  
조정조서

사 건 2021가소 손해배상(기)  
원 고

전주시

송달장소: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, H타워 301호 법무사 전  
종필 사무소(만성동)

피 고

전주시  
파트)

조정장 판사  
조정 위원  
법원 주사보

기 일 : 2021. 10. . 10:00  
장 소 : 제 호조정실  
(신청사3층)  
공개 여부 : 공 개

원고

출석

피고

출석

다음과 같이 조정성립

조 정 조 항

1. 피고는 원고에게 1,200만 원을 2021. 11. . 까지 지급한다.

만일,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.

2.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.

3.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 구 의 표 시

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금2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20. 10. 경부터  
- - - - , 지는 연 5%의, 부터 , 는 연 12%의 각 비율로  
계산한 돈을 지급하라

청구원인

별지 기재와 같다.

법원 주사보

조정장 판사

